

의안번호	2210532
의 퇴 인	김소희의원
회 답 일	2025.7.13.
추 계 번호	25B29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 폐지되어 해당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국가가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5억 8,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79억원(연평균 15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안 제14조)	1,580	1,580	1,580	1,580	1,580	7,900	1,580
국비(50%)	790	790	790	790	790	3,950	790
지방비(50%)	790	790	790	790	790	3,950	790

주. 1) 본 추계결과는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비용 등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규모 및 수거 주기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국고보조율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50%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 <단서 삭제> (제1항)	의무규정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제11항 신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14조제1항(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환경부 자료 및 의견을 참고하여 추계함
2	안 제14조제11항(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종전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¹⁾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및 국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비용(이하 “처리비용”)지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폐지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개정안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 폐지되어 해당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국가가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생활폐기물관리 지역 지원)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에 대하여 국가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지출은 증가하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감소하게 되어 총 재정지출 규모에는 변동이 없음

1)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가구 수에 1가구당 평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곱하여 총 재정소요를 산출한 뒤,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가구수) 2025년 기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20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으며 총 9,859가구임
 - 이때, 추계기간 동안 가구 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 [참고자료 1]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현황
 - (가구당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의 1가구당 평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의 비용을 준용함
 - 2023년 기준,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의 2,390만 4,571가구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총 3조 8,238억 7,6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1가구당 평균 비용은 15만 9,964만원임
 - 이때, 추계기간 동안 가구당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 [참고자료 2] 생활폐기물관리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 (국고보조율) 국고보조율은 유사사례(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를 참고하여 50%로 가정함
 - 환경부는 도서지역에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 이때, 추계기간 동안 국고보조율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 폐지되어 해당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국가가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5억 8,000만원등 향후 5년간 총 79억원(연평균 15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안 제14조)	1,580	1,580	1,580	1,580	1,580	7,900	1,580
국비(50%)	790	790	790	790	790	3,950	790
지방비(50%)	790	790	790	790	790	3,950	790

주. 1) 본 추계결과는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등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규모 및 수거 주기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국고보조율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50%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등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규모 및 수거 주기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1]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현황

(자료: 환경부, 2025년 기준)

시·도	시·군·구	가구수
합 계	20개	9,859
인천광역시	옹진군	19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98
	화천군	98
충청북도	옥천군	59
충청남도	보령시	1,005
	서산시	173
	서천군	4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1,038
	정읍시	991
	남원시	55
전라남도	여수시	1,078
	구례군	52
	고흥군	61
	해남군	193
	진도군	187
	신안군	2,620
경상북도	울릉군	101
경상남도	통영시	1,540
	거제시	3
	남해군	67

[참고자료 2] 생활폐기물 관리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자료: 환경부, 2023.12. 기준)

시·도	시·군·구	수집·운반·처리비 (백만원)	가구수 (가구)	가구당 처리비 (원/가구)
전국	시·군·구 합계	3,823,876	23,904,571	159,964
01. 서울특별시	시·군·구 합계	529,056	4,469,417	118,372
02. 부산광역시	시·군·구 합계	149,000	1,564,588	95,233
03. 대구광역시	시·군·구 합계	107,856	1,094,148	98,575
04. 인천광역시	시·군·구 합계	161,695	1,350,720	119,710
05. 광주광역시	시·군·구 합계	59,965	655,433	91,489
06. 대전광역시	시·군·구 합계	66,200	680,261	97,316
07. 울산광역시	시·군·구 합계	47,172	490,690	96,134
08. 세종특별자치시	시·군·구 합계	37,813	160,835	235,104
09. 경기도	시·군·구 합계	1,066,940	5,978,724	178,456
10.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합계	198,047	760,239	260,506
11. 충청북도	시·군·구 합계	166,225	779,908	213,133
12. 충청남도	시·군·구 합계	238,765	1,034,223	230,864
1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합계	193,813	859,109	225,597
14. 전라남도	시·군·구 합계	209,121	906,830	230,607
15. 경상북도	시·군·구 합계	259,458	1,282,399	202,322
16. 경상남도	시·군·구 합계	260,577	1,523,892	170,994
17.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합계	72,174	313,155	230,474